

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[별표 2] <개정 2026. 2. 19.>

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 한시정원표(제3조 관련)

1. 제3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(존속기한: 2028년 2월 29일)

총계	19
교육공무원 계	19
대학 계	19
교수·부교수 또는 조교수	14
조교	5

2. 제3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(존속기한: 2030년 2월 28일)

총계	53
교육공무원 계	53
대학 계	53
교수·부교수 또는 조교수	38
조교	15

3. 제3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(존속기한: 2030년 2월 28일)

총계	65
교육공무원 계	65
대학 계	65
교수·부교수 또는 조교수	47
조교	18

4. 제3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(존속기한: 2028년 12월 31일)

총계	18
일반직 계	18
5급 이하	18

5. 제3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(존속기한: 2030년 2월 28일)

총계	41
일반직 계	41
4급 이하	41